

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[별표 5] <신설 2024. 3. 18.>

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준(제13조의2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
나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, 늘리는 경우에도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자격 정지 기간
가. 장애아동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24조의4 제1항제1호가목	1년
나. 장애아동을 모욕하거나 헐뜯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24조의4 제1항제1호나목	1년
다. 장애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24조의4 제1항제1호다목	1년
라. 장애아동의 주거지에서 절도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	법 제24조의4 제1항제1호라목	1년
마. 장애아동을 돌보는 장소에서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한 경우	법 제24조의4 제1항제1호마목	1년
바. 장애아 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장애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	법 제24조의4 제1항제2호	1년
사.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·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	법 제24조의4 제1항제3호	3개월
아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 비용을 받은 경우	법 제24조의4 제1항제4호	8개월